

○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 (판매기업용)(상환청구권 없음)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약관, 약정서명	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 (판매기업용)(상환청구권 없음) (구 하나은행)	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 (판매기업용)(상환청구권 없음)	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전산통합에 따라 통합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명에 (구 하나은행) 명칭 삭제
약관, 약정서 내 타 약관, 약정서명	전자방식의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구 하나은행)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	전자방식의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	전산통합으로 인한 타 약관명 변경내용 반영
세부 내용변경	<b>포괄한도거래약정서(기업용)</b> 제4조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, 중도상환수수료율  제9조 약정한도수수료  제 10 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①한도거래 여신의 경우 제 1 조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제 1 조에서 정한 약정한도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.	<b>포괄한도거래약정서(기업용)</b> 제4조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, 중도상환해약금률  제9조 약정한도수수료(삭제)  제9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①한도거래 여신의 경우 제1조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용어변경 (중도상환수수료 → 중도상환해약금) (중도상환수수료율 → 중도상환해약금률)</li> <li>▪ 내용 및 조항삭제 (약정한도수수료 폐지에 따름) (제9조 삭제에 따라 하위 조번호 일괄변경)</li> <li>▪ 내용삭제 (약정한도수수료 폐지에 따름)</li> </ul>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	<p><b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</b> 제 6 조(담보가치의 유지) 대상채권에 대하여 판매기업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사고, 사변,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물품등의 하자, 불량 등이 발생하여 은행이 대상채권 대금을 구매기업 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고, 부족금액에 관하여는 은행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</p>	<p><b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</b> 제 6 조(담보가치의 유지)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·납품의 불합격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1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,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 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제한(공정위 및 금감원의 변경권고 반영)</li> </ul>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

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